2019년 연말정산 안내문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년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해당연도에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 현재(12월31일) 재직 중인 사람

- 연말정산 제출서류

-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중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http:// www.hometax.go.kr) 1/15일경 오픈예정 (PDF파일로 다운받아 메일로 보내주세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무한 기간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무월수만 체크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전근무지 근무월수 포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자료(근로자가 해당 지출기관에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주택관련공제 추가제출서류(뒷장에 해당되는 주택공제관련 첨부서류 확인)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대한 지급자료(홈택스, 보험회사에서 연도별로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합니다.
- ③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 기본공제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공제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없음			
	직계비속.입양자	만20세 이하 (1999.01.01.이후)	없음		
	장애인인 직계비 속의 장애인 배 우자	없음			
부양가족	본인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 거가족(주거형편		
공제	배우자직계존속	(1959.12.31.이전)	상 별거, 일시퇴 거도 허용)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 거가족 (단, 취학.질병.근		
	기초수급자	없음	무.사업상 형편 에 따른 일시퇴 거만 허용)		
	위탁아동	만18세 미만 (2001.01.02.이후)	-		

-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이중공제 불가, 중복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

구 분	추가공제요건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49.12.31)인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
부녀자공제	본인이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1) 배우자가 있거나 2) 배우자가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공제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소 득공제, 월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임	금원리금상환액	
구분			법 소정 대출기관 차입 (금융기관)	거주자 차입(개인)	
근로자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는 모든 주택관련 공제 배제)		
(신청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 없음	5,000만원 이하	
		보유주택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등	· 본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일 것	
		차입자	신청단	인(본인)	
		차입시기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차입금	기타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할 것	차입시기별 차입이자율이 다음일 것 16.03.16~17.03.09 연 1.8%이상 17.03.10~18.03.20 연 1.6%이상 18.03.21~19.03.19 연 1.8%이상 19.03.20 ~ 연 2.1% 이상	
	임차인		신청임	인(본인)	
임차	Ŧ	구모, 공제대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은 대상 아님)		
주택	전입	주택	명시적 전	입요건 없음	
	요건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이므로 전입되어 있어야 함		
대상	지출	주택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휴직기간 포함) 기간 지출분		
원리금 상환액	기간	레다 과세기가 주 그므워(호지기가 포하) 이고			
027	지출금액		지출기간에 지출한 금액 전액 인정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x 40%		
공제 공제한도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제출서류		· ·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간소화자료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원리금상환 입증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 대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것.

									1
			공제	네 신청하는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이지	ㅏ상환액 차요 	입금의 차입역	일
	구분	분	~ 2000.10.31.	2000.11.1.~ 2003.12.31.	2004.1.1.~ 2005.12.31.	2006.1.1.~ 2013.12.31.	2014.1.1.~ 2014.12.31.	2015.1.1.~ 2018.12.31.	2019.1.1.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	1	규.	모 제한 없음	2
대 상	기준	취득일 당시	기준	시가 제한	없음	3억원 이하	4억원	l 이하	5억원 이하
주 택	시가	취득 이후				관계없음			
	4	노유자		근호	로자(신청자)	본인[공동명의	의 소유 인정	d]	
대 상		환기간 기간 포함)	10년	이상		15년 이상		15년(고정 거치분할 10년)	상환은
차 입	ţ	다입일	제한 없음		소유권이전	선(보존)등기일	밀로부터 3가		
금	,	다입자		근호	로자(신청자)	본인[공동명의	의 차입 인정	d]	
	ţ	가입처	주택도시기금, 금융회사 등						
근로	보유	대상주택 취득당시		제한없음		무주택	(취득 5 주택어	택 또는 1주 당시 이미 5 대해서는 · 가 등 제한	보유한 규모,
자 ·	주택 수	해당 과세기간	2주택 이상 보유기간 3개월 이내 제한 없음						
신 청	•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또는 1주택						
자		(12.31)				. 11 = 11		-11.01.011	
· 본	세디	배주여부	(세대			(12.31.) 세대 대주는 모든			(음)
인	전입	세대주			제한 없음	(전입하지 않	아도 됨)		
	여부	세대원			반드시 전	입(주민등록등	등본확인)		
	지출	세대주	해당 과세기간 근무월(휴직기간 포함) 기간 지출분						
대 상	기간	세대원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휴직기간 포함)이고 전입월인 기간 지출분					출분	
0	TIᄎ	단독차입	지출기간에 지출 + 본인부담 이자 = 전액 인정						
· 자	지출 금액	공동차입	지출기간에 지출 + 약정상 본인부담 차입금에 대한 이자 = 전액 인정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n로 보아 공제대상 이자금액 산정)						
제출서류			- 개별,공동	등주택가격확 등명서(인터	기주택저당치 인서 (민원2 넷등기소 별	· ·	환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7 1				즈태마려져:	 츠 人드고제		
구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우대 형주택청 약종합저 축포함)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저축	가입시	기	~ 05.12.31.	06.1.1.~ 07.12.31.	08.1.1.~ 09.12.31.	10.1.1. ~	09.5.6. ~	~04.2.29.
근로자	세대	주 여부	(세대주만	해당 과 공제 가능하며	네기간 종료일 , 세대원이 다			우 공제불가)
ᆫᆂᄭ		과세기간 급여		7,	000만원 이ㅎ	-		관계없음
해당 과세기간 중 법소정	주택수		무주택 또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이하		무주택	무주택 (2020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 서를해당금 융기간에 반드시 제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 모 1주택 이하
세대가 보유한 주택요건	보유 주택	가입후 취득	관계없음	가입당시	취득 당시 3억원이하	관겨	없음	관계없음
	기준 시가	취득후 가입	· 전계 ᆹᆷ	3억원 이하	가입 당시 3억원이하	(무주택	만 공제)	전계 ᆹ금
지출기간		출기간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 월(휴직기간 포함) 기간 지출분					Ē분
지출 지출기간 저축납입액 중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원 이하					월 15만원 이하 (연180만원 이하)	
	공제금액		공제대상 납입액 X 40%					
공제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Т	출서류		- 간소화자료 또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액 세액공제

구분			월세액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는 모든 주택공제를 받을 수 없				
근로자 (신청인)	총	급여	해당 고	해당 과세기간 7,000만원 이하			
	보유	주택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지	∦(12.31.)	법 소정 세대	대 무주택자일 것	
		차인 약자)	신청인(본인), 본인 기본	공제 대성	상자(나이,소득	두 요건 충족해야 함)	
임차		대상 백 등	주택, ²	두거용 오	오피스텔, 고시	원	
주택		·모 ·시가	국민주택규모 (해당 기준시가 규정은				
	전입	요건	반드/	시 전입되	되어 있어야 힘	함	
	지출자		신청인(본인) 부담분				
대상 월세액	지출기간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휴직기간 포함)이고 전입월인 기간 지출분				
	지출금액		지출기간에 지출한 본인부담분 전액 인정				
	공제	금액	공제대상 월세액 X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해당 금액 (AxB)	A.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기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학	. — -	&임차기	기간&전입기간&근무기간 간일수 / 주택임대차 약기간의 총일수	
공제	액	한도		750	만원		
	공제율 세액공제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	용제율	세액공제액 한도	
			5,500만원 이하		12%	90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	75만원	
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¹ - 월세 지급 입증서류(현금영			F,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공제 주요항목 유의사항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불가(기본공제 여부와 무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불가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
- 면세점, 선박, 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비용 처리된 금액 제외
- 자동차 구입금액, 리스료, 자동차 렌트비 제외(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정치자금 기부금 등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료 결제금액 제외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제외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제외
- 상품권 구입금액 제외
-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기관 거래 사용액 제외

② 자녀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만 공제가능
-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취학한 2019년 초등 1학년생(2012년생 취학아동)이 공제 대상자이나 특례에 따라 일찍 초등학생이 된 초등 1학년생(2013년생 취학아동)도 공제 가능(해당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공제불가

③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에 있어 남편이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료는 남편만 공제
- 본인의 기본공제자가 피보험자(종피보험자)로 되어있어야 함
-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자로 되어있어야 함
- 피보험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불가
-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불가
- 미납보험료는 공제불가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공제대상 이 되지 않은 경우 공제불가
- 외국보험사에 납부 한 보험료 공제불가

④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로 인정 / 유산 후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불가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환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인정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내용은 근로자가 해당 지출기관에 별도의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공제불가
- 라식 수술비 공제가능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등) 구입비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 품 구입비용 공제불가
- 해외의료비 공제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의료비'지 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공제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불가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공제불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법령 등에 추가되었습니다.(기존에도 공제대상 아니었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가 보험사로부터 국세청에 자료 제공이 되었으며 근로자는 홈택 스 <mark>공인인증서 로그인 - MyNTS - 실손의료보험금조회</mark> 의 경로를 통하여 조회 되는 금액 을 소득공제신고서 실손의료비칸에 기재해주세요. 조회 자료에 나오지 않는 금액은 가입

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
- 직계존속, 수급자 교육비 공제불가(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공제불가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중 2016.12.31. 이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공제불가
- 근로자와 동거한 적이 없는 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불가(교육비는 생계요건[일 시퇴거]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가 받지 않은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 공제불가

한 보험회사로 개별 문의하여 조회해주세요.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공제불가(취학 전 아동만 공제가능)
- 공무원이 받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공제불가
-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공제불가

⑥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기부금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만15세 이상 만35세 미만 - 60세 이상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만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2019.1.1.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9.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퇴직한 날부터 2년 내에 임신하거나 보조생식술(인공수정포함)을 받은 경우,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10년미만의 기간내에 복직한 경우				
감 면 신 청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원천징수의무자 -> 관할세무서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 장애인 입증서류 - 경력단절여성임을 입증하는 서류(의료기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해당 기업 취초취업일로부터 청년: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60세이상,장애인: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경력단절여성: 소득세를 감면받은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한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대상 최초취업일 감면율 감면세액 한도 청년 2012.1.1. ~ 90% 연 150만원 60세이상자 장애인 2014.1.1. ~ 70% 연 150만원 경력단절여성 2017.1.1. ~ 70% 연 150만원				
1. 임원 2.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배우자 감면대상에서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친족관계)인 사람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일용근로자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일반근로: 100만원 ○ 원양어업, 항행: 300만원 ○ 건설현장: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추 가> 	(좌 동) - 설계업무 포함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 <개정이유> 세제지원 형평성 고려

종 전	개 정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좌 동)
<추 가>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7의3·§18②)

<개정이유>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연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좌 동) ○ (좌 동)
<추 가>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령 §17)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종 전	개 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확대
비과세기준①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비과세기준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② (좌 동)
 ○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 근로자 ・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청소・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후 가> 	○ 대상직종 확대 (좌 동)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47②)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	□ 공제금액 인상
○ 1일 10만원	○ 10만원 → 15만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기준시가 5 억원 이하

<적용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공제대상 조정
○ 6세 이상의 자녀	○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4)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분 : 30%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적용시기>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24, 소득법 §34③·§61②)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장부보관 의무기간 5년인 점을 감안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이월공제기간) 5년간 이월○ (적용시기) 2008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5년 → 10년(적용시기)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시기> '19.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10)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소득법 §150)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 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10%	○ (공제율) 5%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_9



(1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령 §118의5, 조특령 §117의3)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좌 동)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좌 동)
<추 가>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소득령 §118의5, §225의3 신설)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 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신 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 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적용시기> '19.2.12.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제출 대상기관 조정 (소득령 §118의6)

<개정이유> 실제 학자금대출채권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 조정

종 전	개 정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 자료 요구 대상 기관 조정
○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대상 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 공사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의8에 따라 구상채권 등을 매수한 법인	(좌 동)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②, 조특령 §14⑩)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추장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 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 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 추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신 설>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35%

<적용시기> '19.2.12.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조특령 §14의2)<개정이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규정 근거 마련 (구체적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종	전	개 정
~ 신 〈	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마련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3)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21.12.31.

(4)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조특령 §14①)

<개정이유> 공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①「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으로서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 ③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CB・BW포함)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④ ③을 포함하여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 완화 - 공모펀드의 경우 신탁의 설정일부터 9개월 이내 ④ (좌 동)

<적용시기> '19.2.12.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조특령 §14①)

<개정이유>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 운용요건 완화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 이상 투자	
<신 설>	 ○ 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기준 적용 배제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 투자원금으로 투자비율'산정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

<적용시기> '19.2.12.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21.12.31.



(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21.12.31.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9)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대주주 등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전용기하) '21 12 31
	○ (적용기한) '21.12.31.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조특령 §17) <개정이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구체화

종 전	개 정
0 1	□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 감면액 계산방법 중합소득 ★ 근로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감면율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감면율 *** 중합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50%) ※ 다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 [(종합소득 ★ 근로소득금액) - 중소기업 취업자] ★ 경영성과급 ★ 감면율 중급여액 ★ 중합소득금액) + 중소기업 취업자 ★ 경영성과급 ★ 감면율 중급여액 ★ 중합소득금액) + 소득세 감면세액] ★ 경영성과급 ★ 감면율
<신 설>	□ 세액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세액공제 신청방법
	○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 조특령 §27)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등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 가>	○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좌 동)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 '21.12.31.

<적용시기> (대상) '19. 2. 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95)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 (대상)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공제율) 10% -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등 	○ (좌 동)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도서 · 공연 사용분 : 30%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사용분	(좌 동)
 도서 · 공연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 (좌 동) ●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o '19.12.31.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보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 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신 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 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신청 허용 (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시)

(1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도서 ·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도서(서점): 3억원 -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7,500만원 ○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

(15)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 (좌 동)
<추 가>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적용시기> '19.2.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다운 방법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홈텍스** 검색 → 첫 화면 외른쪽 중앙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왼쪽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 옆의 조회**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1월1일~7일 08:00~22:00
- · [기부금 단체] 자료계출 신청 : 11월 중 08:00~24:00



간소화 서비스 pdf자료를 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a. 공통서류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한번에 내려 받기 (파일명 변경x, 비밀번호 설정x,)



②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b. 중도입사자 추가서류

- ① 2019년 중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근무한 기간만 월별로 조회** (전근무지+현근무지=2019년 Full 근 무자의 경우 월별조회X)

